

개 정 전	개 정 후
<p>제8조 【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의 관리·운용등】</p> <p>① 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한 독서진흥사업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보조 2.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원 3. 독서생활화 및 국민독서운동사업에 대한 지원 4. 도서관발전 및 독서진흥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5. 도서관 및 문고의 지역문화사업·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6. 기타 도서관발전 및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 <p>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.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3. 문화관광부장관은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여유자금에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한다. <p>③ 문화관광부장관은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여유자금에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예의 예치 2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. 재정투융자특별회계 기타 다른 기금에의 예탁 	<p>제8조 【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의 관리·운용등】 (삭제)</p>
<p>제9조 【기금의 관리·운용계획】</p> <p>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매회계연도 개시전 3월이 내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·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 【기금의 관리·운용계획】(삭제)</p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·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·지출에 관한 사항
2. 당해연도의 사업계획·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3.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

제10조 【기금의 회계기관등】

- ① 문화관광부장관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사무를 위임받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 명령관과 그 기금의 지출 및 수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.
- ② 문화관광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.

제10조 【기금의 회계기관등】(삭제)

제11조 【위원회의 구성】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문화관광부차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.
 1. 행정자치부·교육부·과학기술부·문화관광부·정보통신부·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
 2.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협회의 장 및 문고협회의 장
 3.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기타 도서관·문고 및 독서·출판업무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
- 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11조 【위원회의 구성】(삭제)

<p>제12조 【위원장등의 직무】</p> <p>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, 위원회를 대표한다.</p> <p>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제12조 【위원장등의 직무】(삭제)</p>
<p>제13조 【위원회의 회의】</p> <p>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제13조 【위원회의 회의】(삭제)</p>
<p>제14조 【위원회의 간사】</p> <p>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문화관광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.</p>	<p>제14조 【위원회의 간사】(삭제)</p>
<p>제15조 【지방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의 구성등】</p> <p>① 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(이하 "지방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특별시·광역시 및 도의 경우에는 법 제4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역대표관의 장이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방대표관의 장(지방대표관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)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도서관 및 문고와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. 당해 지역의 교육·문화계 인사 기타 도서관·문고 및 독서업무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자 <p>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의</p>	<p>제15조 【지방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의 구성등】(삭제)</p>

<p>입기는 2년으로 한다.</p> <p>④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역의 도서관 및 문고의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한 시책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. 기타 도서관 및 문고의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<p>⑤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기타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	
<p>제22조 【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】</p> <p>①-③항 생략</p> <p>④ 자료번호 및 자료분류기호(이하 “한국문헌번호”라 한다)의 부여대상·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<u>한국문헌번호운영심의회</u>의 심의를 거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.</p> <p>⑤-⑥항 생략</p>	<p>제22조 【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】</p> <p>①-③항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.....<u>표시방법등에 관하여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.</u></p> <p>⑤-⑥항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3조 【한국문헌번호운영심의회】</p> <p>① 한국문헌번호의 부여에 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한국문헌번호운영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심의회의 위원은 관련행정기관소속 공무원 및 도서관·출판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p>	<p>제23조 【한국문헌번호운영심의회】(삭제)</p>
<p>제27조 【운영위원회의 회의등】</p> <p>제13조의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</p>	<p>제27조 【운영위원회의 회의등】</p> <p>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
<p>제28조 【사립공공도서관등의 등록】</p> <p>법 제25조제1항 또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설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</p>	<p>제28조 【사립공공도서관등의 등록】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
<p>서관설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.....<u>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</u>.....</p>
<p>제35조 【협력망운영계획】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의 장은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<u>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력망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역대표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 ② 항 생략 ③ 중앙관의 장은 협력망 상황을 연차별로 조사·분석하고 이를 <u>위원회</u>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④ 항 생략</p>	<p>제35조 【협력망운영계획】..... <u>협력망운영계획을 수립하여</u> ② 항 (현행과 같음) ③ <u>문화관광부장관에게</u>..... ④ 항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8조 【권한의 위임등】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 1. 기금중 특정의 도서관 및 문고 또는 특정지역의 도서관 및 문고의 진흥을 조건으로 조성된 기금의 관리·운용 2.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공공도서관의 등록 3. 법 제26조(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의한 사립공공도서관의 지도·지원 및 서류제출 요구 4. 법 제27조(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의한 사립공공도서관의 폐관시 등록증 반납에 관한 업무 5.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등록</p>	<p>제38조 【권한의 위임등】(삭제)</p>
<p>[별표3] 사서직원의 자격요건(제5조 관련) 2급정사서 자격요건 1. 대학(교육대학·사범대학·방송통신대학·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자 2.-7.호 생략</p>	<p>[별표3] 사서직원의 자격요건(제5조 관련) 2급정사서 자격요건 1. 대학(교육대학·사범대학·방송통신대학·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2.-7.호 (현행과 같음)</p>